

---

## Policy and Law Report \_Vol.98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 8.6 ~ 8.16) -

August 17, 2021

법무법인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p>기획재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b></li> </ul> <p>기획재정부는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안건을 논의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b>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추경의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8월중 신속 공급 총력</li> <li>•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 사회보험료 유예연장, 공과금 납부유예 지원 등에 대해서도 8월중 검토 완료하여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금융권 대출 보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관련해서는 9월중 검토 발표 예정</li> </ul> </li> </ul> </li> <li>② <b>수출입 물류 동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항공 추가 공급) 8월중 미주·동남아 항로에 임시선박을 월간 최대규모*인 총 13척 투입하고,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 선사에 인센티브(컨테이너당 2만원)를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별 임시선박 투입규모: ('21.1~4월)매월 4척, (5월)6척 (6월)6척 (7월)9척</li> </ul> </li> <li>- 하반기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를 3,300편('21.上, 3,196편)으로 증편하고,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수송(화물기로 개조 등)도 적극 지원</li> <li>• (물류비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용자(1,000억원, 중진공), 수출촉진자금 대출 (300억원, 수은), 단기수출보험금 지급기간 단축(2→1개월, 무보) 등 금융지원도 추진</li> </ul> </li> <li>③ <b>최근 원자재 가격동향·전망 및 대응방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철금속 최대 2% 할인판매(8월중 구리·아연·주석 1~2% 할인판매), 일정한도내 외상방출(한도 30억원) 등을 실시하고, 원자재 구입 지원 측면에서 기정예산을 활용, 중소기업 원자재구매 용자자금 1,000억원도 별도 신설(7.28)</li> </ul> </li> <li>④ <b>한국판 뉴딜 2.0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SW 선도계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기반 정밀의료 SW가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위한 핵심기술로 부각, 이에 정부도 한국판뉴딜 2.0의 디지털뉴딜 사업에 닥터앤서 클리닉, AI 앰블런스 등을 신규 반영해 적극 육성해 나갈 방침</li> <li>• 닥터앤서 클리닉을 통해 전국 8개 의료기관에 국산 AI 의료SW를 도입('22~)하고, AI 앰블런스로 단계적으로 전국에 보급·확산('22~) 계획</li> <li>• 또한, 민간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고품질 의료데이터를 단계적으로 민간 개방*하고, AI 의료SW 인·허가 사전상담으로 신속 제품화도 적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의료영상 데이터 29종 구축·개방 → ('22)적외선·조직 데이터 등 25종 추가 → ('23)의료영상분석, 환자 병원진료 쏠주기 데이터</li> </ul> </li> </ul> </li> </ul>	<p>2021-08-12</p>

부처	내용	일시
	<p>⑤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까지 해외정비 의존도 30% 이하, '30년까지 국내 MRO 규모 5조원('20년 0.7조원) 달성 목표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li> <li>• 국내 정비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정비 항공기의 공항사용료를 감면하고, MRO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공부품 관세 면제, 정비 비용절감 등도 지원</li> </ul>	
산업통상 자원부	<p>• <b>「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제정 (7.23. 국회 본회의 통과, 8.10. 국무회의 의결)</b></p> <p>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내외 산업환경의 급변 등 지역 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p> <p>따라서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① 위기 전(前), ② 위기 초기(初期), ③ 위기 중(中), ④ 위기 이후(以後)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상응하여 지원수단을 체계화하는 방안으로 법률안을 마련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지역경제 상시 점검) 지역산업과 경제여건에 대한 상시 조사 및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p> <p>② (위기 전 : 산업위기 예방조치) 지자체 주도로 특정산업 대상으로 예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이행에 필요한 지원 제공</p> <p>③ (위기 초기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주된 산업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하고 경제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p> <p>④ (위기 중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가 모두 침체된 경우 지정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시행</p> <p>⑤ (위기 이후 : 지정해제 및 연착륙 지원)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면 지정을 해제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을 통해 연착륙 유도</p> <p>⑥ (재정 지원 및 특례 조치) 금융·고용·산업 분야 재정지원과 세제감면·보조금·산업입지 관련 특례조치 등 지원수단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있음</p>	2021-08-10

부처	내용	일시
국토 교통부	<p>• <b>자동차 관리업 분야 규제혁신 등 2분기 우수사례 5건 선정</b></p> <p>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등 5건을 선정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b> -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시설·장비 구입 부담을 경감하여 소규모·소자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 사례</p> <p>② <b>앱으로 부르면 달려오는 신개념 교통서비스 ‘세종셔클’ 서비스</b> - 세종시의 급격한 인구증가 대비 부족한 대중교통 시설로 인한 잦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구밀도가 높은 1생활권 지역(세종시 북서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 서비스를 선보임</p> <p>③ <b>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플랫폼 사업 추진</b> -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직면한 농산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올해 주거플랫폼 사업모델을 신설하여 적극 추진</p> <p>④ <b>트래블 버블 합의로 무격리 해외여행 개시 및 항공업계 정상화 기반 마련</b>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행욕구 해소 및 항공 관광 면세 등 관련 업계의 경영악화 극복을 위한 적극적 대응 방안 필요</p> <p>⑤ <b>「건설산업 규제혁신 3.0」으로 건설현장 애로 해소</b> - 건설사업자가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 전담조직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전이나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규제는 제외하되, 코로나-19 등에 따른 여건변화를 반영한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을 확정</p>	2021-08-10
	<p>• <b>「항공정비(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b></p> <p>정부는 항공MRO*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항공정비(MRO)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의결함</p> <p>* 항공MRO (Maintenance, Repair, Overhaul) :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성능유지를 위한 ①운항, ②기체, ③부품, ④엔진 등 정비를 총칭</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국내 MRO 물량 확대 지원</b> - 해외 외주정비 국내 유턴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상시적 지원체계 구축 - 군 정비 민간참여 확대, 부품국산화 등을 통한 군 정비물량 민수전환 확대 - 국산헬기 공공구매 확대, 헬기 구매환경 개선 추진</p>	2021-08-12

부처	내용	일시
	<p>② <b>가격 경쟁력 확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가공)부품 수입 관세 부담 완화, 싱가포르 수입 가공품 관세 면제</li> <li>- 국산부품 상용화 인증 지원, 국내업체간 부품 공동사용 활성화</li> <li>-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통해 MRO 업체 투자·용자 등 금융지원</li> </ul> <p>③ <b>항공정비 기술역량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RO 기술로드맵을 마련('22.上)하여 파급력이 큰 핵심기술부터 우선 투자</li> <li>- “부품개발-인증”을 연계한 다부처 협업 R&amp;D로 개발부품 상용화 강화</li> <li>- 해외 정비기술 획득을 위해 국제공동개발사업 참여시 R&amp;D 우선 지원</li> <li>- 인스펙션 드론, AI 딥러닝 기술을 접목한 첨단 정비방식 도입</li> </ul> <p>④ <b>MRO산업 성장기반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RO 클러스터 지역별 특화분야 육성 지원</li> <li>- 정비분야 한-미 항공안전협정 체결, 인증인프라 구축</li> <li>- 기초 정비인력 지속 양성, 항공기 기종특화교육 등 현장연계 교육 확대 등이 있음</li> </ul>	

##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p>• <b>「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11.11. 시행예정)</b></p> <p>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정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p> <p>이에 따라 최근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분기와 반기에서 월별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7925호, 2021. 3. 16. 공포, 7. 1. 시행)되었음</p> <p>이에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도 현행 연별(年別)에서 월별(月別)로 변경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 및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173조 및 제177조 제3호 신설)</p>	2021-08-10
	<p>• <b>「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11.11. 시행예정)</b></p> <p>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정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p> <p>이에,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현행 연별(年別)에서 월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과세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임 (제104조의32 신설)</p>	2021-08-10

<p>국토 교통부</p>	<p>• <b>「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2.11 시행예정)</b></p> <p>현행법은 민간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 신탁개발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이와 관련, 해당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이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p> <p>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인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신탁개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p> <p>이에 민간사업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 법인(SPC)에 대해서도 부동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탁개발에 의한 민간 산단 개발사업의 안정성 확보라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20조의2제1항)</p>	<p>2021-08-10</p>
<p>금융 위원회</p>	<p>• <b>「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2021.8.27 시행예정)</b></p> <p>외국 집합투자증권 중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입국가, 홍콩 또는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만을 국내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도 국내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28조 신설)</p>	<p>2021-08-11</p>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기획재정부</p>	<p>• <b>「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p> <p>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안 제224조제2항)</p> <p>②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명령사항 위반 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별 20만원, 과세자료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대한 명령사항 위반 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 (안 별표 5)</p> <p>※ 의견제시기간 :8/13(금)~9/23(목)까지 <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a>로 제출</p>	<p>2021-08-13</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p>	<p>• <b>「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p> <p>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신설(법률 제18200호, 2021.6.8.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의 범위와 기준 신설 (안 제8조제2항)</b></p> <p>-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전년도(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등으로 정함</p>	<p>2021-08-11</p>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p>② 정보보호 공시 이행 기한 신설 (안 제8조제5항) -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정보보호 현황이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정함</p> <p>③ 기타 개정사항 (안 제8조제3항, 제4항, 제6항) - 관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문구 및 용어를 수정함 등이 있음</p> <p>※ 의견제시기간 :8/11(수)~9/23(목)까지 <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산업과)</a>로 제출</p>	
	<p>• 「<b>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p> <p>5G 특화망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 5G 특화망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 중 일부 유형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등록결격(제7조), 외국인 지분제한(제8조) 등의 적용을 면제하고,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제18조), 이용약관 신고 등(제28조)의 적용에 있어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p> <p>※ 의견제시기간 :8/11(수)~9/23(목)까지 <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산업과)</a>로 제출</p>	2021-08-13
공정거래 위원회	<p>• 「<b>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p> <p>자본금 요건 미충족 시 등록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처리기한을 명시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신설하는 등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할부거래 분야에서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명시 (안 제18조 등) -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 이에 대해 별도로 처리기간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민원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p>	2021-08-12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② <b>자본금 요건 미충족 시 등록취소 근거 마련 (안 제19조 등)</b>  -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만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  추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더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  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장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p> <p>③ <b>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의무 신설 (안 제27조의2 신설 등)</b>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은행, 공제조합 등)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한 후, 통지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며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p> <p>④ <b>과징금 관련 공정거래법 준용규정 마련 (안 제47조 등)</b>  - 현행법은 과징금 연대납부, 결손처분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과징금을 부  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거나,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  방안이 불분명함  -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을 부  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는 경우,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  처리방안을 명확화함</p> <p>⑤ <b>과태료 규정 신설 및 정비 (안 제53조)</b>  - 현행법상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및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부재하  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조건이 타 소비자법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과 상이함  - 이에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및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조건을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p> <p>※ 의견제시기간  :8/11(수)~9/23(목)까지 <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공정거래위원회(할부거래과)</a> 제출</p>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정무위원회	<p>• <b>「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2인)」</b></p> <p>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통한 금융거래 등을 요건으로 하여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금융회사 등에게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정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서로 모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p> <p>더욱이 현행법상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시중 은행들은 자금세탁 문제, 투자 부실 문제 등 발생시 과도한 리스크 부담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요구에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됨</p> <p>이로 인해 대다수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실명계정 개설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정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게 될 경우 관련 사업자 및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인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의2제4항제2호가목)</li> <li>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을 지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회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여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설하지 못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전문은행으로 하여금 계정 개설에 필요한 요건을 검증하도록 하고, 해당 전문은행은 검증 결과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설하도록 함 (안 제7조의2 신설)</li> <li>③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함 (안 법률 제1711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및 제5조)</li> </ul>	2021-08-06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기획재정위원회	<p>• <b>「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2인)」</b></p> <p>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음</p> <p>그러나 최근 법인 사주 일가가 업무용승용차로 보기 어려운 고가의 차량 등을 구입 또는 리스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차량을 법인 명의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음</p> <p>이에, 업무용승용차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 하고,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법감정에 맞는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을 시행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2제1항 및 제6항)</p>	2021-08-11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p>• <b>「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5인)」</b></p> <p>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메신저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3인 이상의 단체 대화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p> <p>특히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는 강제적인 대화 초대와 함께 해당 대화에서 퇴장하더라도 다시 초대가 가능하여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일부의 경우 학교폭력의 수단으로도 악용되는 상황임</p> <p>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화를 요청받은 이용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8제2항 및 제76조제2항제4호의4 신설)</p>	2021-08-1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p>	<p>• <b>「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0인)」</b></p> <p>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관련 분쟁의 내용도 고도화·복잡화되고 있으며, 특히 5G 상용화 이후 불안정한 품질로 인한 민원과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임</p> <p>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되었으나 위원 수 부족, 지원조직의 부재, 조정안 불수락으로 인한 조정불성립 등의 사유로 분쟁조정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용자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p> <p>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분쟁의 64.4%는 법으로 규정된 1차 처리기간 기준일인 60일을 초과하였고 최대법정처리 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경우도 20%에 달하였음</p> <p>이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 증원 및 연임 제한 완화, 지원조직 근거 마련, 직권조정결정제도 도입 등 조치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통신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안 제45조의2, 안 제45조의6 및 제45조의9제1항제2의2호 신설 등)</p>	<p>2021-08-10</p>
<p>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p>	<p>• <b>「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4인)」</b></p> <p>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p> <p>그런데 현행법에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인 전문인력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조사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보호라는 입법목적보다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제1항)</p>	<p>2021-08-11</p>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국토교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의원 등 11인)</b>」</li> </ul> <p>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수급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다단계 방식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태임</p> <p>이에 원수급인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당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하도록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불법 하도급에 대한 자진신고가 있을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96조제4호·제7호, 안 제96조의2 및 제102조·제103조 신설)</p>	2021-08-10

###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원회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8/20(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52호 발간	
국회도서관	8/17(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69호 발간 -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	
	8/18(수) 15:00	제18차 「AI와 국회포럼」 개최 - 메타버스 속에 나는 누구인가?	ZOOM 온라인
예산정책처	주중	「202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 발간 -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등	
	주중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발간 -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및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	
	주중	「NABO 재정동향 & 이슈」 2021년 Vol.2 (통권 제17호) 발간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사 결과 등	
입법조사처	8/17(화) 14: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개인정보 거버넌스와 법체계 정합성 확보 현안 검토	온라인

## [별첨1] 제390회국회(8월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운영위	8/17(화) 10:00	전체회의	법안 상정
정무위	8/20(금) 10:00	전체회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결산 상정
기재위	8/17(화) 10:00	전체회의	결산 상정
	8/17(화) 14:00	조세소위	법안 심사
	8/18(수) 10:00	예산결산기금소위	결산 심사
	8/19(목) 09:00	예산결산기금소위	결산 심사
	8/19(목) 10:00	조세소위	법안 심사
	8/19(목) 14:00	전체회의	결산 및 법안 의결
교육위	8/17(화) 14:00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심사
	8/18(수) 14:00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심사
국방위	8/20(금) 10:00	전체회의	법안 및 결산심사, 업무보고
행안위	8/19(목) 10:00	전체회의	법안 상정, 결산심사
문체위	8/17(화) 10:00	전체회의	법안 의결
환노위	8/18(수) 14:30	환경법안심사소위	기후위기 대응법안 심사
	8/18(수) 18:00	전체회의	법안 심사

##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8/17(화) 14:00	자율주행 도입에 따라 사회와 산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박상혁, 송언석 의원실, 국토교통부	유튜브 생중계
8/18(수) 14:00	치매 공공 후견사업 토론회 - 치매 공공 후견사업 3년의 성과 및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인재근, 김상훈 의원실 외	유튜브 생중계
8/19(목) 14:00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동물 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박홍근 의원실, 농림축산 식품부 외	유튜브 생중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8/10(화) 14:00	<a href="#">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자산 보호와 활용</a>	이원욱, 윤관석, 박성중 의원실 외	국회 내
8/11(수) 14:00	<a href="#">K-뷰티 경쟁력과 위기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a>	김상희 의원실, 국회 K-뷰티포럼	중앙보훈 회관 1층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을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서예지** | 소속변호사 T. 02-316-1787 E. yjiseo@shinkim.com
- **문응필** |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 **최유리** |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소속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희훈** | 소속변호사 T. 02-316-7917 E. hhpark@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